인턴십운영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의대학교(이하 "본 대학교"라 한다) 인턴십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2. 5. 1>

제2조 (인턴십 과정 편성) 인턴십의 과정과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9. 9. 1, 2012. 5. 1, 2014. 3. 1, 2015.

11. 15. 2018. 2. 1>

① 국내 실습과정

구분	기간(학점)	시행시기	신청자격	비고
단기	4주(3학점)	계절수업	스어	
인기	8주(6학점)	州海下省		
장기	16주(17학점)		4개 학기 이상 이수자	
	(단, 졸업 학점이 140 학점 이상	학기 중		
	인 학과의 경우 18학점 부여)			

- ② 국외 실습과정: 국내 실습과정과 내용은 같다.
- ③ 인력양성과정

시행시기	학점	신청자격	국내/외 시행여부	비고
계절수업 또는 학기 중	1주(40시간) 기준으로 1학점을 부여하며, 16주 이상은 최대 17학점 부여(단, 졸업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학과의 경우 18학점 부여)	4개 학기 이상 이수자	국내/외	총장의 승인하에 과정 편성

제3조 (학점인정 및 성적부여) ① 인턴십의 학점은 총 17학점까지 전공과목으로 인정하고, 17학점을 초과하는 학점은 자유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. 단, 졸업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학과는 인턴십 실습학점을 18학점까지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. <항 신설 2012. 5. 1, 개정 2014. 3. 1>

- ② 복수전공자에 한하여 해당 복수전공관련 직종으로 실습을 나갈 경우 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하고, 18학점을 초과하는 학점은 자유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. <항 신설 2012. 5. 1>
- ③ 비 전공분야의 인턴십은 비전공분야 인턴십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총장의 승인하에 자유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. <항 신설 2012. 5. 1, 개정 2015. 11. 15>
- ④ 단기과정 취득학점은 계절수업 취득 제한학점을 초과 할 수 없다. <단서조항삭제 2006. 3. 1, 개정 2007. 1. 1, 2012. 5. 1, 2018. 2. 1>
- ⑤ 인턴십의 성적은 Pass/Non Pass로 부여 한다. <항 신설 2012. 5. 1, 개정 2015. 11. 15>
- ⑥ 'ICT학점이수 인턴제' 사업 참여자는 ICT 특별법에 의거, 'ICT학점이수 인턴십' 과목으로 학점을 부여한다. <개정 2015. 2. 1>

제4조 (이수제한) ① 인턴십은 최대 23학점, 2회까지 가능하며, 과정별 이수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. 단, 졸업학점 이 140학점 이상인 학과는 최대 24학점까지 인정한다. <개정 2012. 5. 1, 2014. 3. 1, 2015. 11. 15>

과정명	최대 이수학점	최대 이수 횟수	비고
국내 실습과정	23학점		총장의 승인 하에 36학점, 3회까지 인정.
국외 실습과정	23학점	2회(IPP과정 포함)	단 과정별 최대 이수학점 및 횟수는
인력양성과정	23학점		초과할 수 없다.

- ② 인턴십 수행 중에는 다른 교과목을 신청할 수 없다. <개정 2012. 5. 1>
- ③ 휴학자는 인턴십 이수를 불허한다. <개정 2007. 1. 1, 2012. 5. 1>
- ④ 8학기(5년제의 경우 10학기) 장기과정 이후의 인턴십은 불허한다. 단 조기졸업의 경우 7학기(5년제의 경우 9학기) 장기과정 이후의 인턴십을 불허한다. <신설 2012. 5. 1>
- 제5조 (실습기관 요건) ①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기업(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립된 업체) <신설 2012. 5. 1, 개정 2015. 11. 15>
 - ②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 투자기관 <신설 2012. 5. 1>
 - ③ 법령에 의해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<신설 2012. 5. 1>
 - ④ 벤처기업 인정을 받은 벤처기업 <신설 2012. 5. 1>
 - ⑤ 기타 인턴십에 적합하다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기업 또는 기관 <신설 2012. 5. 1. 개정 2015. 11. 15>
- 제6조 (실습기관 변경) 인턴십을 수행 중인 자가 실습기관의 특별한 사정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실습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, 실습기관과의 합의하에 인턴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에서 잔여 기간을 이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5. 1, 2015. 11. 15>
- 제7조 (지원신청서 제출) ① 인턴십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에서 정한 기간에 인턴십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5. 1>
 - ② <삭제 2012. 5. 1>
 - ③ 인턴십 이수자에게는 인턴십 이수확인서를 발급하여 취업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. <개정 2012. 5.
 - ④ 인턴십을 수행중인 자가 사고와 질병, 또는 군입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에는 증 빙서류를 첨부하여 수행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5. 1>
 - ⑤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는 학점인정을 불허하며, 재학중 인턴십 과정을 재수행 할 수 없다. 또한 포기자의 수강료 및 등록금 반환은 불허되어 해당학기 납입금은 소멸된다. <개정 2015. 11. 15>
 - ⑥ 기타 교통비 등 제반 경비는 학생 본인이 부담한다.
- 제8조 (대상자 선발 및 지원) ① 본 대학교와 인턴십 실습기관과의 선발기준에 의거, 실습 분야와 실습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발한다. <개정 2012. 5. 1>
 - ② 선발된 인턴십 이수자에게는 소정의 경비를 본 대학교에서 지급 할 수 있다. <신설 2012. 5. 1>
 - ③ 기업별 인턴십 수행인원은 상시근로자수의 30%이내로 선발을 제한한다. <신설 2015. 11. 15>
- 제9조 (수강신청) 학기별 등록금(단기과정은 당해년도 계절수업 학점당 수강료)을 납부함으로써 수강신청이 확정되며, 기한 내 미납 시에는 수강신청을 취소한다. <개정 2012. 5. 1, 2018. 2. 1>

제10조 <삭제 2012. 5. 1>

제11조 <삭제 2015. 11. 15>

- 제12조 (지도 및 성적평가) ① 인턴십 참가 학생 지도를 위한 인턴십 지도교수는 전공 지도교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2. 5. 1, 2015. 11. 15>
 - ② 인턴십 지도교수는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실습기관 및 학생의 현장교육 현황 등을 청취하고, 인턴십 실습일지

작성에 대한 지도, 출근부 등을 점검하고 학생과 실습기관의 애로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. <개정 2015. 11. 15>

- ③ 인턴십 현장방문지도는 수행기간 중 1회 이상 하여야 하며, 출장자에게는 소정의 경비를 지급한다. (단, 인턴십 현장방문지도는 실습과정에 한하며, 해외 인턴십의 경우 방문, 전화, 전산망을 통해 문서 등으로 지도 평가 할 수 있다.) <개정 2012. 5. 1, 2015. 11. 15>
- ④ 인턴십 지도교수는 지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인턴십 종료 1주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, 참가 학생은 기업의 담당자로부터 수행확인서를 받아 실습일지와 함께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5. 1, 2015.
- ⑤ 성적평가는 인턴십 수행확인서(80점), 인턴십 지도보고서(20점)의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얻어야 한다. <신설 2015. 11. 15>

제13조 <삭제 2012. 5. 1>

제14조 (협약사항) 인턴십 수행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5. 1>

- 1. 인턴십에 필요한 교육 또는 실습(근무)계획 <개정 2012. 5. 1>
- 2. 인턴십 중 학생의 보건·위생과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<개정 2012. 5. 1>
- 3. 인턴십에 대한 수혜조건(후생복지 및 실습비 등) <개정 2012. 5. 1>
- 4. 기타 효과적인 인턴십 교육에 필요한 사항 <개정 2012. 5. 1>

제15조 (학생의 의무) 인턴십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5. 1>

- 1. 인턴십 종합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인턴십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,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2. 5. 1, 2015. 11. 15>
- 2. 인턴십 실습기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3. 인턴십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. <개정 2012. 5. 1>
- 4. 인턴십 기간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학교에 알려야 한다.

제16조 (위반자 조치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인정을 불허하며, 사안에 따라 학칙에 의거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9. 1, 2015. 11. 15>

- 1. 인턴십 중 실습기관 내규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 <개정 2012. 5. 1>
- 2. 고의적으로 인턴십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<개정 2012. 5. 1>
- 3.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(정보유출 등)를 한 자
- 4.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

제17조 (기타) 다음 각 호의 서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2. 5. 1, 2015. 11. 15>

- 1. 인턴십 요청서 <기업용>
- 2. 인턴십 참가 신청서 <학생용>
- 3. 인턴십 수행기업 적합 확인서 <지도교수용>
- 4. 인턴십 협약서
- 5. 비전공분야 인턴십 승인 요청서
- 6. 인턴십 종합보고서(출근부, 수행확인서, 일지)
- 7. 인턴십 지도보고서
- 8. 인턴십 운영실태 점검표
- 9. 인턴십 변경신청서(실습과정 변경신청서, 지도교수 변경신청서)

10. 인턴십 이수확인서

제18조 <삭제 2012. 5. 1>

제19조 (IPP형 일학습병행제사업) IPP형 일학습병행제사업 현장실습과정의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. <신설 2015. 11. 15>

제20조 (준용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본 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준용하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- 1.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경과조치) 2003학년도 제1학기의 학기제 인턴십은 제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편성을 16주로 한다.
- 3. 이 변경 규정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4. 이 변경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5. 이 변경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6. 이 변경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7. 이 변경 규정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8. 이 변경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9. 이 변경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10. (경과조치) 제2조 국가기관 해외플랜트건설인력양성과정 및 그와 유사한 인력양성교육과정생의 학점인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- 11. 이 변경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12. 이 변경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13. 이 변경 규정은 2015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- 14. 이 변경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